

2020. JULY
VOL. 1

현장이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경영지원 PAPER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의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및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해 휴관(중단) 해왔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코로나 19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를 통해 소득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규정 마련 등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재개후 사업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코로나 19 관련 노인일자리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코로나 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19 사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현장의 관련 이슈와 사업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담아 제공해 드리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슈페이퍼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업무지원시스템의 경영관리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 코로나 19에 따른 세부적인 경영관련 상담이 필요한 사업단은 온라인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방법 : 첨부된 온라인 상담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온라인 상담일정]

법률관련 : 2020.7.23.(목) 14시 인사·노무, 세무·회계 관련 : 2020.7.28.(화) 14시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부(02-6925-219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인사노무

[노무법인 의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활동(근로)시간 연장 조치에 따른 이슈사항을 정리하고, 재정 지원일자리의 업무처리 유의사항을 전달하고자 함

1 현황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재개
-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소득 지원을 위해 공익활동 · 시장형사업단 · 사회서비스형 기준 활동(근로) 시간을 연장하여 당해 연도 사업계획상 1인당 배정된 활동비(임금)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¹⁾

2 활동(근로)시간의 개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활동(근로)시간은 참여자와 수요처 대표, 사업장 대표 등과 협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로 정함
- 활동(근로)시간을 변경할 경우, 근로관계 당사자 간 합의, 개별 근로자의 동의, (명시적)청구 등을 토대로 협약 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함
 - 단 활동(근로) 시간 변경이 아닌, 연장근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 건 별로 당사자 간 개별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구체적 사유와 기간을 정한 사전적 · 포괄적 합의도 허용²⁾
- 근로시간은 임금수준은 물론, 휴일, 휴가, 사회보험 적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
 - 노인일자리사업 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더 근로한 경우, ‘더 일하는 방식’에 따라 참여자별 임금 등에 미치는 결과는 상이함
- 한편, 유급자원봉사활동에 준하는 “공익활동”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활동 시간 연장은 다른 활동조건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1) 보건복지부 2020년 노인일자리사업 활동(근로)시간 연장 안내 통보(노인지원과-1733, 2020. 5. 7.)

2)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3 활동(근로)시간 연장 효과

- (사례1) 근로계약을 변경한 경우 ※ 시장형사업단에만 해당

- '근로계약서 변경'으로 근로시간을 기존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³⁾ 기본급 및 주휴수당이 상승되어 연관된 임금 상승

〈1주 소정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임금 영향〉

- ① 1일 · 1주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고 해당 시간만큼 기본급, 주휴수당 상승
- ② 통상임금⁴⁾이 인상되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상승
- ③ 참여자(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이 증가하여 평균임금⁵⁾ 상승
- ④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퇴직적립금) 상승
- ⑤ 월 보수액 인상으로 4대보험료 상승 가능
- ⑥ 과세 대상 근로소득 상승으로 '과세구간'에 따라 근로자의 월 급여가 1,060,000원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액 발생 가능⁶⁾

① 기본급 +
주휴수당 상승
" "
② 통상임금 상승
= 연차유급휴가
수당 상승

③ 임금총액 상승
" "
④ 평균임금 상승

⑤ 퇴직금,
4대보험 상승

⑥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증가

기준 근로조건(예시)

구분	시업시각	휴게시간	종업시각	1일 소정 근로시간	1주 소정 근로일수	1월 총소정 근로시간	1월 유급 주휴시간
기준근로조건	9:00	-	12:00	3시간	5일	65.175시간	13.035시간
변경근로조건	9:00	12:00 - 12:30	13:30	4시간	5일	86.9시간	17.38시간

'20 노인일자리 사업 근로계약 변경 시 직접인건비 상승분 추정액(단위 : 원)⁷⁾

구분	근로임금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최소 퇴직(적립)금	합계액	상승분 추정액(월)
기준	559,853	111,971	25,770	55,761	753,355	251,118
변경	746,471	149,294	34,360	74,349	1,004,474	

'20 노인일자리 사업 근로계약 변경 시 간접인건비 상승분 추정액(단위 : 원)

구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상승분 추정액
	실업급여 사업	고용안정, 직업 능력개발사업 ⁹⁾		직장 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0.80%	0.45%		0.90%	3.335%	10.25%	4.50%
기준	5,631	3,168	6,335	23,475	2,406	-	13,672
변경	7,508	4,223		8,447	31,300	3,208	

3) 단, 변경 후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분은 발생하지 않음

4)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시간 · 일 · 주 · 월급 금액

5)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6) 월 급여 1,060,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 금액 없음

7) 시간급 8,590원 기준

8) '20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기타의 각종사업)

9) 상시 근로자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 (사례2) 기존 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초과 근무(연장근로)' 진행한 경우 ※ 시장형사업단 및 사회서비스형 해당

〈1주 소정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 임금 영향〉

- ① 1일 · 1주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하므로 기본급, 주휴수당 동일
- ② 연장근로시간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 ③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퇴직적립금), 4대보험료부담분 등에 영향을 미침¹⁰⁾
- ④ 과세 대상 근로소득 상승으로 '과세구간'에 따라 참여자(근로자) 원천징수액 증가 가능

① 기본급 +
주휴수당 동일
" "
② 통상임금 변동
없음

③ 연장근로 수당
지급(신규발생)
" "
④ 평균임금 상승

⑤ 퇴직금,
4대보험 상승

⑥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증가

기준 근로조건(예시)

구분	시업시각	휴게시간	종업시각	1일 실근로 시간	1주 소정 근로일수	1월 총소정 근로시간	1월 총연장 근로시간	1월 유급 주휴시간
소정근로	9:00	-	12:00	3시간	5일	65.175시간	-	13.035시간
소정(3시간)+ 연장(1시간)근로	9:00	12:00 – 12:30	13:30	4시간	5일	65.175시간	21.725시간	13.035시간

'20 노인일자리 사업 연장근로 발생 시 직접인건비 상승분 추정액(단위 : 원)¹¹⁾

구분	근로임금	주휴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최소 퇴직(적립)금	합계액	상승분 추정액(월)
소정근로	559,853	111,971	-	25,770	55,761	753,355	303,161
소정+연장근로	559,853	111,971	279,927	25,770	78,995	1,056,516	

'20 노인일자리 사업 연장근로 발생 시 간접인건비 상승분 추정액(단위 : 원)

구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각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상승분 추정액
	실업급여 사업	고용안정, 직업 능력개발사업		직장건강 보험료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0.80%	0.45%	0.90%	3.335%	10.25%	4.50%	
기준	5,375	3,023	6,046	22,405	2,297	-	
변경	7,614	4,283	8,566	31,741	3,253	-	16,311

10) 단,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일정기간 동안 실제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더라도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금 지급대상에도 해당하지 않고, 연장근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의무가입에 해당되지 않음, 사회서비스형은 퇴직금 미해당

11) 시간급 8,590원 기준

4 사업유형별 활동비(임금) 관리 유의사항

● 공익활동 · 재능나눔활동

- 유급자원봉사활동에 준하는 공익활동의 특성상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활동비로 지급된 금품 또한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근로)시간 연장을 거부하는 공익활동 참여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 30시간까지 활동이 가능하고, 활동시간 연장에 동의하는 경우 연장된 활동시간만큼 일정액의 실비변상금이 추가로 지급¹²⁾ 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사회서비스형

-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고 월 최대 30시간(초과근무 포함 1일 6시간 이내) 연장근로 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5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기본급(+주휴수당)과 30시간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 등에 대한 가산수당(시간급 통상임금*1.5)을 계산하여 지급
-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월 30시간을 근무함에 따라 참여자의 근로소득이 증가하여 과세구간에 해당될 수 있고, 중도퇴사 하는 경우 참여자는 활동기간의 소득을 내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할 수도 있음

● 시장형사업단

- 활동(근로)시간이 변경 · 연장된 참여자의 인건비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기존 월 25만원 이하에서 월 35만원 이하로 증액된 바, '20년 시간급 최저임금액 8,590원을 기준으로 1개월에 약 11.64시간에 해당
- 1일 · 1주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변경하는지 또는 연장근로 하는지에 따라 연장근로 가산수당 발생여부와 활동비 소진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
-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거나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 내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참여자의 평균임금이 인상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있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퇴직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2) "자원봉사활동이란... 무상을 원칙으로 하나,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보호 대책의 일환(「자원봉사활동 기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 혹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책의 일환으로 상대방 및 제3자로부터 일정액의 실비변상금이 지급되더라도, 이는 제공되는 활동(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어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구별됨(대구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나301869 판결)

제2장 법률

[법무법인 연두]

코로나 19로 인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의 업무재해, 피해보상 등 관련 사례별 처리방안을 전달하고자 함

1 산업재해 보상

1.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여부

Q. 음식점을 운영하는 시장형사업단에서 근무하는 고령자가 식사를 하려 온 고객과의 접촉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다. 고령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요?

A.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2020년 2월 11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산재보상 업무 처리방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은 업무상 질병 조사대상 및 업무상질병 인정 요건으로서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 〉

- 해당 바이러스 감염원을 검색하는 공항 · 항만 등의 검역관
 -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출장자
 -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
 -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 ※ 현지법인 근무자의 경우 산재적용 여부 조사 후 산재요양 여부 판단

〈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 〉

- ※ 위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아래에 모두 해당하면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
- ①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 ②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 ③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
 - ④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따라서, 단순 비보건의료인 위 시장형사업단 고령자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로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자가 될 것이고, 그밖에 업무활동범위와 전염경로가 일치하고,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하였으므로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전염될 만한 상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출퇴근이나 회식 · 행사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여부

Q. 고령자친화기업에 근무하는 고령자가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 아닌 출퇴근, 회식, 회사 행사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요?

A. i) 출퇴근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출퇴근재해는 ①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하거나, ②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는데, 산재 판단에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나 통상적인 경로 · 방법의 일탈여부가 중요합니다. 다만, 통상적 출퇴근 경로에 이탈한 경우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염인과의 접촉' 그리고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근한 사실'을 입증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ii) 회식이나 회사행사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마목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목은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질병 · 장해를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행사나 회식을 회사의 지시 혹은 승인 하에 참가 한 경우인지, 당해 행사나 회식을 근로시간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 업무상 재해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의 원인이 된 행사나 회식을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으로 참여하였거나 근로시간(연장)으로 본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것입니다.

2 피해(손실) 보상 청구

1. 코로나19 창궐지역으로 업무상 출장을 가게 되어 감염된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피해보상 청구 여부

Q. 시니어클럽 소속 사회복지사가 업무상 코로나19가 유행 중인 지역으로 출장을 갔다가 감염된 경우, 수탁기관인 복지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요?

A. 수탁기관인 복지법인이나 시니어클럽 관장이 감염 방지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소속 사회복지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해당 복지사는 사용자인 복지법인에게 민법 제750조 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하여 막대한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이 국가를 상대로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Q. 시장형사업단이나 고령자친화기업이 운영하는 식당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정부가 그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함에 따라 막대한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 시장형사업단이나 고령자친화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고령자친화기업과 같은 민간사업장 등이 입은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해당 민간사업장을 ① 일시적으로 폐쇄, ② 일반 공중의 출입 금지, ③ 해당 장소 내 이동 제한, ④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확진자로 인한 건물 오염 피해 또는 그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산종합보험이나 화재보험으로 담보받을 수 있는지 여부

Q. 확진자로 인한 건물 오염 피해 또는 그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산종합보험이나 화재보험으로 담보받을 수 있나요?

A.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건물 오염 손해는 ‘면책위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 오염 등으로 인하여 영업손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험이 담보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보험의 경우 전염병병원체 오염으로 인한 손해는 화재나 벼락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건물 등)에 발생한 손해가 아니므로 화재보험으로 담보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비록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보험으로 담보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확진자로 인한 건물 오염 피해 또는 그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확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Q. 노인일자리사업 사업장에 확진자가 출입하여 건물이 오염됨에 따라 사업장이 폐쇄되는 등으로 영업손실 기타 손해를 입은 경우 확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확진자가 본인이 확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 등을 오염시키거나 건물을 오염시켜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건물 등을 출입하거나 이용한 것이라면, 확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확진자가 본인이 확진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건물 등을 오염시키거나 건물 오염 등에 따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건물 등을 출입하거나 이용한 것일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제한될 여지는 있습니다.

3 보험료 납입 유예

1.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곤란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여부

Q.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곤란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거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나요?

A. 일부 보험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생계곤란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 6개월까지 납입유예 기간을 연장하여 주고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가입한 보험회사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자가 이미 납입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았다면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세무회계

[회계법인 조은]

코로나 19로 인해 최근 다시 시작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현장에 연간 세무일정 및 주요세목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꼼꼼한 회계처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함

1 개요

- 세법에서는 소득이 발생하는 납세의무자(개인 및 법인)에게 관련 세법에 의한 기한까지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금의 납부 의무 규정
- 영리기업이 설립되는 시점부터 이러한 세법상의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
 - 세법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실행하지 못하면 가산세라는 추가적인 부담 부과
 - 보통 영리기업의 회계연도는 1년(일반적으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단위로 구분, 이러한 회계연도 중 어떠한 세목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을 신고하고,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는 상당히 중요

2 연간 세무일정

● 연간 주요 세무일정

- 영리기업에게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는 중요한 세법상의 신고 및 납부 행위
- 명심해야 할 부분은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꼭 실행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금에 대한 자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고는 꼭 실행하여야 함

〈연간 주요 세무 일정〉

신고기한	과세세목	주요내용
1월 25일	부가가치세(확정신고)	전년도 10.1~12.3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월31일	근로소득세 간이 지급 명세서	7월~12월 지급분
2월말	소득세(지급조서제출)	기타소득자지급자 지급조서 제출
3월10일	소득세(연말정산)	급여소득자 보유 사업장 연말정산.지급조서
3월31일	법인세 신고납부(법인)	전년도 법인세 확정신고 및 납부
4월25일	부가가치세(예정신고)	1.1~3.3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5월31일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 신고(전년도 1.1~12.31)
7월25일	부가가치세(확정신고)	4.1~6.3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7월31일	근로소득세 간이 지급 명세서	1월~6월 지급분
8월31일	법인세(중간예납)	당해연도(1.1~6.30) 법인세 중간예납
10월25일	부가가치세(예정신고)	7.1~9.30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매월 10일	소득세(원천징수)	전월 지급 근로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 등
2,4,7,10월말	소득세(일용직지급조서)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근로소득세 간이 지급 명세서	

3 주요 세목

● 법인세

- 주식회사 및 협동조합과 같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회계연도 동안 법인의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월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해야 함

〈 법인세 계산구조 〉

계산구조	내역	비고
결산서 상 당기순이익	결산을 통해 산출된 손익계산서 상 금액	(*1)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통해 가감된 내역	(*2)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3)
- 비과세소득		
- 소득공세		
= 과세표준		(*4)
X 세율	10%(2억원이하), 20%(200억원이하), 22%(3천억이하), 25%(3천억초과)	(*5)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가산세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6)
= 차기감납부세액		

〈 주요 사항 〉

(*1): 법인세 계산의 출발은 회사가 작성한 손익계산서로부터 출발한다. 즉, 1.1~12.31 동안의 모든 거래가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정확한 법인세 신고가 실행될 수 있다.

(*2): 회계상과 세법상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차이로 인하여 세무조정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회계상으로는 집행한 접대비는 모두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지만, 세무상 접대비 한도금액 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3): 사업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결손이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결손이 회계상 정확하게 계상된다면, 향후 10년동안 발생하는 이익에서 상계 될 수 있다.

(*4): 법인세 납부의 기준은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은 매출액 개념이 아닌,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개념이다. 즉, 매출액이 많다고 법인세를 많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원가 및 비용을 차감한 이익이 많을수록 법인세의 부담이 커진다.

(*5): 일반적으로 소규모 기업의 경우,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일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6): 8월말에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및 은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등이 해당된다.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

계산구조	비고
매출세액 (공급가액X0%,10%) - 세금계산서 발행분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 - 기타(정규 영수증외 발행분)	(*1)
(-) 매입세액 - 일반매입 - 고정자산매입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	(*2)
(+) 매입세액불공제 = 납부세액	(*3)
(-) 전자신고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 가산세 = 총괄납부세액	

〈 주요 사항 〉

(*1): 공급가액은 손익계산서 상에 계상되는 매출액에 해당됨. 적용되는 세율은, 수출의 경우 0% 적용하고, 일반적인 매출액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2): 세금계산서 수령분은 물론 법인신용카드에 포함된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하다.

(*3):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및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등이 포함된다.

● 원천징수

- 소득을 지급하는자가 대신 신고 및 납부하는 행위를 원천징수라 하며, 신고 및 납부하는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 영리기업의 경우, 직원들의 월급에서 세금을 차감하여 대신 납부하는 행위를 원천징수라고 함
- (원천징수 대상) 영리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기타소득 및 사업자등록을 개설하지 않은 인적용역에 지급하는 사업소득 등이 원천징수 대상
- 근로소득의 지급시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산출하고 있는 세금을 차감한 후 급여를 지급하여야하며, 기타 소득의 지급시에는 일반적으로 8.8%(지방소득세 포함)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소득은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 이렇게 지급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표준과 세금이 확정되며,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이 확정
-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는 일반적으로 지급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한다. 하지만,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반기신고제도 신청 가능
- 반기신고제도는 1월부터 6월까지 대상소득은 7월 10일까지 신고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대상소득은 1월 10일 까지 신고함

4 유의사항

● 1년간의 회계기록 및 재무제표는 필수

- 법인세, 부가세 및 원천징수 신고 등은 영리기업의 회계처리, 손익계산서 및 자금집행 등의 정리를 통해 시작될 수 있음

※ 1.1~12.31 모든 거래에 대한 주기적인 정리는 중요하면서 필수인 것

● 납부는 못해도 신고는 제때하자

- 모든 세법에서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별도로 규정

- 즉, 신고를 하였다고, 납부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납부를 하였다고 하여 신고가 면제되는 것도 아님
-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업의 자금사정 및 정확한 회계기록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납부금액의 산출이 어려울 경우에도 신고를 우선 실행하는 것도 기업의 추가적인 손실(가산세)을 방지할 수 방법

● 결손이라도 신고하자

- 앞서 살펴본 법인세의 경우, 당해연도 발생한 결손금은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 이번연도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적당한 결손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12. 31까지의 모든 거래를 반영한 정확한 손실을 계상하는 것도 향후 납부할 세금을 절약해주는 방법이 될 것

● 우리회사의 재무제표를 요구하자

- 회계프로그램이 없거나, 법인세 세무조정과정이 복잡하여 회사가 직접 회계처리를 못하고 외부의 전문가(공인회계사 등)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회사의 재무제표의 작성은 외부전문가 대행해주더라도, 세무신고에 대한 책임의 주체는 기업에 있음
- 항상 연간 세무일정에 대한 사전공부 및 관심을 가져야 함
- 또한, 분기단위의 재무제표를 요구하여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문제점을 진단할 필요가 있음

문의사항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경영관련 문의사항은 업무지원 시스템의 경영관리 상담 게시판을 통해 글을 남겨 주시면 상시 답변 드립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부(02-6925-219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